

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

의안 번호	22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6. 25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0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, 평창군보증채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『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』 용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중
- '99년과 2000년에 상환 도래되는 자금을 2회에 걸쳐 군수의 채무보증서를 받아 대환(돌려메우기)하였던 자금 336백만원과 2001년 상환 도래되는 자금 134백마원에 대하여,
-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정부의 『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』에 의거 농가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간을 7년간(2년거치 5년분할상환) 상환기간을 연기코자 함에 있어,
- 본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은 연리5%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 담보물건의 부족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이 불가함에 따라 당해 자금에 대하여 평창군수의 채무보증 신청이 있어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동의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 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『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』 용자금 20억원을 '92.6.29일 평창군의회 동의의 동의를 얻어 '92.7.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'92.8.31일 용자실행 하였음.
- 정부에서는 매년 누적되는 농가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2001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 자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,

- 2001년도 상환도래되는 원금을 7년간 상환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제고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,
 - 연기되는 원금은 연리5%의 금리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.
- 따라서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1년에 상환 도래되는 자금 470백만원에 대하여 『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』을 지원받아 상환 기간을 7년간 연기코자 함에 있어,
- 본 농가부채대책자금은 연리5%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,
 - 법인소유의 담보물건이 없고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자금대출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하였음.

3. 채무보증이 필요로한 이유

가. 채무보증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

- 『2001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』에 의한 지원방식이므로 본 자금에 대하여 추가 채무보증을 하여도 기존의 채무보증 사항과 변동이 없음.

1). 채무보증액

- 금차 대출금리와 당초 채무보증 금리가 동일함 ⇒ 연리5%
- 금차 대출액은 대환(돌려메우기)형식이므로 기존의 상환도래액을 대환 조치하므로 보증액의 변동이 없음.

2). 보증기간

- 당초 채무보증한 기간내에서(2012년) 2001년 상환도래액중 금회 채무보증신청한 470백만원에 대하여만 7년간 상환연기되므로 전체적인 상환기간의 변동이 없음.

나. 채무보증 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① 2001.6.30일현재 상환도래액의 상환불가시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 및 기타 금융자금 지원불가(연체이자 연17%)
 -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면 기타 운전자금 대출불가
- ② 미수용시 연체이자 과중 및 운전자금 부족으로 법인의 경영난 악화
- ③ 최악의 경우 법인의 운영포기 및 도산시 기존 채무보증액에 대한 변제가 불가피하여 군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

- ④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채무보증이 불가피 함.

4. 관계법규 및 지침

가.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5항

나.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

다.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및 제5조

- 붙임 : 1. 채무보증서(안) 1부.
2. 채무보증신청서 사본 1부. “끝”

채 무 보 증 서(안)

제 호

봉평농협장 귀하

평 창 군 수 (인)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.

1. 주채무자 : 평창군 용평면 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조 도 원
2. 채무건명 : 『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』 지원자금 대출 채무보증
(「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」 용자금중 2001년 상환도래액의 일부)
3. 채 무 액 : 금사억칠천만원(W470,000,000)
4. 이 자 율 : 년 5%
5. 상환기간 : 2001년 6월 ~ 2008년 6월(7년간)
6. 상환재원 : 유리온실 시설재배 및 법인운영 수익금
7. 담 보 : 성장작목시범단지 시설물(유리온실 4동/6,000평, 저온저장고 1동 /200평) 및 농가부동산 - 기 담보설정분
8. 대환자금과목 : 농가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
9. 관계기관 : 봉평농업협동조합(장평지소)
10. 채무보증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15조, 지방재정법 제10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,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.
11. 기 타
12. 준수사항
 - 가. 채권자는 평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평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 - 나.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다. 평창군수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, 채권자 기타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- 라. 채권자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.
- 마.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.
- 다만, 취득할 담보가 없을시는 『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』 용자금 대출시 '92.7.14일 군수의 채무보증 발급에 의한 대출실행후 저당권설정한 물건에 의하며, 채권자는 이에 필요한 근저당권 추가설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바. 집행기관과 채권자는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
재산영농조합법인

우 232-93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560번지 전화:(033) 334-0160 /전송:332-9884

문서번호 재산2001 - 1P

시행일자 2001. 6. 1P.

발 신 재산영농조합법인

수 신 평창군수

선결	소장	이영호	지시	
접	일자	2001	결재	과장
	시간	6.1P		
수	번호	2525	공람	장상
	처리과	농업경영과		
	담당자	이영호		

제 목: 정책자금 장기분할대상 대출금 원금상환 신규지원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01년도 농가부채대책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자금을 신규지원 받고자 채무보증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3. 2001. 01. 01. ~ 2003. 12. 31.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자 5%로 지원받고자 합니다.

2001년	2002년	2003년	계
470,005천원	134,440천원	105,880천원	710,325천원

※ 별 첨 : 채무보증신청서

재산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



채 무 보 증 신 청 서

평 창 군 수 귀하

재산영농조합법인
대표 조 도 원

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 업 명 : 『농가부채 특별법』 지원자금 대출 채무보증
(“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”, “농가부채대책 및 경영안정대책” 용자금 대환)
2. 내 용
 - 가. 채 권 자 : 봉평농협장(장평지소장)
 - 나. 채 무 자 : 재산영농조합법인
 - 다. 채 무 액 : 금사억칠천만오천원(₩470,005,000)
 - 라. 이 자 율 : 년 5%
 - 마. 상환기간 : 2년거치 5년분할 상환
 - 바. 상환계획 : 농산물판매 원금이자 분할상환
3. 사 유
 - 가. 주채무발생 : 2001년 6월30일 현재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과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용자금 상환 도래 원리금
 - 나.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: 정부의 「2001년 농가부채 특별법」에 의거 농가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아 2001년 6월 30일 현재 상환도래된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과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용자금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연기(대환)코자 하나 농림사업자신용 보증서 발급 및 담보물 부족
 - 다.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: 지방제정법 제10조, 동법시행령 제21조 2항, 지방자치법 제115조,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.
 - 라. 기타

4. 준수 사항

- 가. 주 채무자는 평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평창군수에게 보고하겠습니다.
- 나.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얻겠습니다.
- 다. 군수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, 채권자 기타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, 재산,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.
- 라.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.
- 마.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겠습니다.
- 바. 채무자 재산영농조합은 위사항을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조합원과 임직원이 일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.

채무 지불보증의뢰 신청자

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도원

